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준공 표지판에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 》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05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제22065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탄소발자국 정보표기 의무화 및 과태료 상향 (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42조제2항, 제99조제16호 신설, 제100조제4호 삭제)	3

I.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제22065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6.

다. 회 부 일 : 2024. 12. 17.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

는 것임(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3. 검토의견

가. 탄소발자국 정보표기 의무화 및 과태료 상향 (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42조제2항, 제99조제16호 신설, 제100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u>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생략)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건설기술 진흥법</u> 」 제57조에 따른 <u>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u> 등을----- -----. ----- ----- -----.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u><신설></u>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u> 제100조(과태료)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개정안은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¹⁾에 주요 건설 자재·부재²⁾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영구 표지판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생략)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기초용 강판,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③ (생략)

미설치 등에 대한 시정 명령·지시³⁾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5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하려는 것임.

‘탄소발자국⁴⁾’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를 말하는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⁵⁾는 재료와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⁶⁾에 관한 계량적인 정보(환경성적표지)를

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7. (생략)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3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생략)

2.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3.~7. (생략)

② (생략)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⑦ (생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은 자원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과 함께 환경성적표지의 내용⁷⁾에 해당함.

개정안은 환경성적 표지 중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건설산업 법률 체계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용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자재·부재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부고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7. (생략)

7)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3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자원발자국**: 광물,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지구 자원에 미치는 영향(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2.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3. **오존층영향**: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4. **산성비**: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_x, SO_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5. **부영양화**: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6. **광화학 스모그**: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7. **물발자국**: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②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표시한다.

하여, 탄소 저감 필요성을 환기하고 저탄소 자재·부재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보다는 녹색제품⁸⁾ 사용을 장려하는 환경부 관련 법령⁹⁾에서의 규율을 통해 탄소 저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완공 후 표지판 설치에 공사에 참여한 주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자재·부재 관련 사항 기재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자재·부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철강·시멘트 산업이 공정의 특성상 탄소 저감이 매우 어려운 업종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면, 저탄소 철강·시멘트의 안정적 수급 가능성, 저탄소·시멘트 생산에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대비 경쟁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③ (생략)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생략)

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는 주요 건설·자재 부재의 소비자로서 탄소발자국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전문기관에 정보제공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건설자재·부재의 종류와 사용량은 발주자가 결정하므로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면 의무주체를 발주자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509호, 어기구의원 대표발의)”¹⁰⁾과 관련이 있으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91

10) 동 개정안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509호,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은 둘 다 ‘탄소발자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동 개정안은 안 제2조제16호에서 ‘탄소발자국’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509호,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은 ‘탄소발자국’의 정의 규정 신설 없이 동 개정안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음.